

부산유라시아플랫폼 대관시설 운영 지침

부산유라시아플랫폼 대관시설 운영 지침

제정 2022. 4. 18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지침은 부산광역시 「부산역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부산유라시아플랫폼(이하 “플랫폼”이라 한다) 실내대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

- ① “플랫폼”이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02번지 일원에 위치한 부산역사 앞에 조성된 건축물을 말한다.
- ② “대관”이라 함은 교육, 회의, 전시, 행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플랫폼 내 대관시설(강의실 및 세미나실) 및 설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③ “대관자”란 제2항의 대관 절차를 통해 공단의 대관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.
- ④ “대관기간”은 교육, 회의, 전시, 행사 등의 준비 시간부터 설치한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시설이 원상으로 복구되는 시점까지로 한다.

제3조(대관의 범위)

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대관시설은 [별표 1]과 같으며, 대관 이용이 가능한 시설, 시간 및 지원 장비 등은 플랫폼 홈페이지(<https://beplatform.or.kr>)를 통해 공지한다.

제4조(대관료)

- ① 대관요금은 [별표 1]과 같으며, 냉·난방료는 에너지 시가를 반영하여 별도 부과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대관료 및 냉·난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나 부산광역시가 직접 주최·주관하는 행사의 경우
2. 플랫폼 시설 관리·내부 콘텐츠 운영 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
- ③ 대관자는 공단이 지정하는 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2장 대관 절차

제5조(대관신청)

- ① 대관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 사용일 9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플랫폼 홈페이지(<https://beplatform.or.kr>)를 통해서 대관 신청을 할 수 있다. 다만,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, [별지 제1호 및 제2호]의 대관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서면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.
-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관신청 시 필요에 따라 [별지 제4호]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④ 대관은 다양한 참여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 기관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며, 동일한 대관자가 주최·주관하는 동일 신청건에 대하여 월 8일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6조(대관 승인)

- ① 공단은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플랫폼의 관리·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대관자의 의견을 들어 대관 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7조(우선사용)

대관 일정 경합시 접수순서에 따라 우선권을 부여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우선하여 승인할 수 있다.
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익 또는 공공성 목적으로 대관하는 경우
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관하는 경우

제8조(대관 승인 제한 및 취소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공단은 대관 승인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

1.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거나 대관 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2. 공단이 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3. 과도한 시설물의 설치로 플랫폼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, 기타 플랫폼의 관리·운영 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4. 소음, 소란, 선동 등으로 타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5. 상업적/정치적/종교적 이익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
6. 이 지침을 위반하여 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
제9조(대관취소)

- ① 대관자가 대관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,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한 취소 신청 또는 [별지 제3호 서식]의 대관변경신청서를 서면 제출하여 대관 사용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② 공단은 제1항에 의해 대관 취소가 접수된 경우,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, 반환기준은 [별표 2]와 같다.
 1. 부산광역시 및 공단의 귀책으로 대관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
 2.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이 불가하게 된 경우
 3. 대관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

제3장 대관자 의무사항

제10조(대관 양도 및 전대금지)

대관자는 대관시설 사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. 다만, 대관자의 사정에 의해 대관 승인 후 공동주최, 주관 및 후원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.

제11조(일정 및 내용 변경금지)

- ① 대관자는 대관 일정 및 내용 등을 공단이 승인한 내용과 달리할 수 없다.
- ② 대관자는 대관 일정 및 내용 상의 중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일 이전에 [별지 제3호 서식]에 따른 대관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다시 승인받아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대관변경이 대관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.

제12조(각종 시설물 및 홍보물 설치)

- ① 대관자가 플랫폼 내에 현수막, 홍보 안내물, 가설설치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, 설치물의 규격, 위치 및 원상복구 방법 등에 대해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설치물의 설치 및 사용과 관련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, 플랫폼 관리·운영에 중대한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공단은 이를 철거하거나 사용 중지시킬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철거 또는 사용 중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,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치물의 손상에 대해 공단은 책임 지지 않는다.
- ④ 대관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직접 청소하고 반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(화재예방 및 안전관리)

- ① 대관자는 대관 기간 중 대관시설의 시설물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, 특히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
- ② 대관자는 대관 사용 종료 후 또는 공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설치물을 철거하여야 하며, 설치 및 철수로 인해 플랫폼의 기존 시설물과 설비에 손상을 가져온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.
- ③ 대관자는 공단이 정하는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대관자가 부담한다.

제14조(손해배상)

- ① 공단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관 기간 중 발생한 인적, 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다.
- ② 대관자는 공단이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,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공단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. 이 경우 대관자는 공단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.

③ 대관기간 중 대관자가 반입한 작품 또는 전시품 및 설치물 등에 관한 관리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으며, 공단은 외부 보안업체 및 CCTV 등의 일반적인 방법만을 제공한다.

④ 대관자는 설치했던 시설물과 장비는 대관기간 내에 철수하고 대관 이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.

제4장 기타사항

제15조(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)

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지침의 해석에 관하여는 「부산역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와 관계 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.

제16조(지침 위반 시의 책임)

이 지침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,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플랫폼 대관시설 및 대관요금

호실	면적(m ²)	요금(원/시간)	비고
104	216.09	6,480	■ 대관시간: 09:00~22:00 ■ 기본대관: 2시간 ■ 면적단가: 30원/시간 ■ 공 휴 일: 20% 가산
107	56.25	1,680	
109	216.09	6,480	
113	56.25	1,680	
115	87.42	2,620	

※ 「부산역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 제2항 및 [별표 1] 참조

대관료의 반환기준

대관 취소 사유	취소 시점	반환 사용료
제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	개시일 전	납부한 대관료 전액
	개시일 후	대관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
제9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	개시일 전	대관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
	개시일 후	대관료의 100분의 10과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[illegible]

【별지 제2호 서식】

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및 시설물이용에 대한 동의서

성명		생년월일	
주소		연 락 처	

본인은 부산유라시아플랫폼 시설 대관에 앞서, 다음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: _____ (서명 또는 인)

부산시설공단이사장 귀하

부산유라시아플랫폼은 시설대관을 위하여,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, 제17조 및 제22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· 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.

■ 수집 · 이용하는 정보 항목

- 개인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, 이메일 등 인적사항
- 법인 : 단체명, 대표자명, 사업자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, 이메일 등 법인관련 사항

■ 정보 수집 · 이용 목적

- 부산유라시아플랫폼 시설대관에 따른 신청서 접수 및 대관 심의, 관리(승인 및 각종 고지사항 안내 등), 세금계산서발행 등 최소한의 범위

■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
-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
- 단, 관련법령의 규정 및 방침에 의하여 일정기간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(보존기간)에서 정한 보유기간

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?

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■ 시설물 이용에 관한 동의

- 부산역플랫폼시설 대관에 따른 시설물 이용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 의무를 가지며, 원상복구 미 이행 시 향후 대관에 제한에 동의합니다.

상기와 같이 대관시설물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

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

-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 거부 시에는 대관신청 및 사용이 제한됩니다.

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? ☐ 예 ☐ 아니오

【별지 제3호 서식】

플랫폼 대관변경신청서 ☐ 변경 ☐ 취소					
신 청 사 항					
단 체 명 (또는 성명)				사업자등록번호 (또는 주민등록번호)	
주 소		연 락 처		전화번호	
				이메일	
				FAX	
담 당 자	성 명		사 용 시 설	대관시설	_____ 호
	전화번호			사용인원	_____ 명
	주 소				
변 경 사 항					
구분		변경 전		변경 후	
대관기간					
행 사 명					
행사목적					
주최·주관					
그외사항					
설 치 사 항	설 치 물				
	규 격				
	위 치				
	설치방법				
「부산유라시아플랫폼 대관시설 운영 지침」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 이용을 변경합니다. 신청인 성명 : 전화번호 : 주소 : (서명 또는 인) 부산시설공단이사장 귀하					
붙임: [별지 제 4호 서식] 시설물 설치 및 원상복구 계획서					

【별지 제4호 서식】

시설물 설치 및 원상복구 계획서						
단체명 (성명)			주소			
전화번호			실 무 자	성명		
이메일				전화번호		
FAX				이메일주소		
세 부 설 치 계 획						
품명	규격	수량	위치	용도	설치일시	철거일시
참 고 사 항						
「부산유라시아플랫폼 대관시설 운영 지침」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설치 및 원상 복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. 신청인 성명 : (서명 또는 인) 전화번호 : 주소 : 부산시설공단이사장 귀하						
필요 시 추가서류 첨부						